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21037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02.1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28

# 전주<mark>진</mark>국밥 정 보 공 개 서

기막힌한상 가맹사업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기막힌한상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 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원둔산3길 16, 401호

「대표 전화번호] 010-7625-7077

[대표 팩스번호] 0504 - 033 - 3620

[대표 홈페이지] www.전주진국밥.com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Ⅲ. 교육 훈련에 대한 절명 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 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영업표지 주 소				
	전주진국밥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원둔산3길 16, 401호				길 16, 401호
기막힌한상	개인사업자	ŀ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	화번호	대표팩스번호
717226	-		2024.08.12.	진종균	010-76	25-7077	0504-033-3620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	·번호	228	3-03-22641

# 2.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 특수관계인이 없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	
-	-	_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v anny <del>i</del> mund	-	-

#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기막힌 한상	전주진국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11길 32-13, 3층 기막힌한상	김희준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전주진국밥	-
상 호	전주진국밥 OO점	-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상표-40-1858-1460000)



	전주진국밥	
광 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는 2024년 사업 전개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 자료는 대표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의 재무자료입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88,041	0	88,041	117,078	-16,876	-15,928
2022년	136,323	1,342	134,980	249,892	-16,955	-13,561
2023년	176,755	187	176,567	218,557	12,030	15,086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하고 고저 거리 ㅈ 저 이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8 대표시 전포	매출액	상한	하한	
	2021	-	-	-
전주진국밥	2022	-	-	-
	2023	-	-	-

당사는 2024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OL P	취지이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진종균	대표	2019 ~ 현재	을찌로가맥전주송천점 대표	주점업 운영
관련 임원 		대표	2024.08 ~ 현재	기막힌한상 대표	회사업무 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급	상근	비상근	국전구( <i>6)</i>	
2023년 12월 31일	1	0	0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	상표권	, , ,	출원 제40-2020-0219009 등록 제40-1858146-0000	김희준	2032.04.14. (2032.04.14.)

- ※ 당사는 상기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로부터 [전주진국밥]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KORF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Ш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0년 10월 1일

# 2. [전주진국밥] 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020.10.01.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기막힌 한상	전주진국밥	김희준		하나로11길 32-13, 3층
			2024.08.21.	기막힌한상
기마하하사	기막힌한상 전주진국밥	IJᄌᄀ	2024.00.22 청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기탁인안경		│ 진종균 │	2024.08.22. ~ 현재	원둔산3길 16, 401호

# 3. [전주진국밥] 업종

영업표지		업 종
저즈지그바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전주진국밥 -	한식	돼지국밥
	The state of the s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전주진국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l.		2023.12.31	l.
시탁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4	24	-	17	17	-	11	11	-
서울	-	-	-	1	1	-	-	-	-
부산	-	-	-	1	1	-	2	2	-
대구	-	-	-	-	-	-	-	-	-
인천	-	-	-	2	2	-	-	-	-
광주	4	4	-	1	1	-	-	-	-
대전	5	5	-	1	1	-	-	-	-
울산	1	1	-	-	-	-	1	1	-
세종	1	1	-	-	-	-	-	-	-
경기	4	4	-	2	2	-	1	1	-
강원	-	-	-	-	-	-	1	1	-
충북	-	-	-	-	-	-	-	-	-
충남	1	1	-	2	2	-	2	2	-
전북	1	1	-	2	2	-	2	2	-
전남	2	2	-	-	-	-	-	-	-
경북	3	3	-	2	2	-	1	1	-
경남	-	-	-	1	1	-	1	1	-



제주	2	2	-	2	2	-	-	-	-
----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전주진국밥] 가맹점 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26	-	2	-	24
2022	24	10	10	7	1	17
2023	17	4	-	10	-	11

# 6. [전주진국밥]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전주진국밥]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mor Afamili

[전주진국밥]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기	맹점사업자	·의 연간 평	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연간평균	군매출액	연간평균마	출액(상한)	연간평균마	출액(하한)	비고
	가맹점 수	평균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m²당	
전체	11	48,465	4,556	87,151	28,760	13,805	707	7곳 산정
서울	_	해당없음	-	_	_	_	_	5곳 미만
부산	2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대구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인천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광주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대전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울산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세종	_	해당없음	-	_	_	_	_	5곳 미만
경기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강원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충북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충남	2	해당없음	-	_	-	_	_	5곳 미만



	전북	2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Ī	전남	_	해당없음	_	_	_	_	-	5곳 미만
Ī	경북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남	1	해당없음	_	_	_	_	-	5곳 미만
Ī	제주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기재한 것입니다. 단 영업개월 수가 6개월 미만인 가맹점 등 매출액산정이 어려운 매장은 근거로 추정하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공급액, 시장상황, 가맹점주의 노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기막힌한상]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기막힌한상]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KGREA FAIR TR	ADE MEDIATION AGENC449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전주진국밥]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	-	-

#### 10.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전주진국밥] 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8.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그브	그브 스다	カレフト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הוש
一一正	'L'  -	기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미포



합계	-	-	-	-	-	-
 광고	소계	-	-	-	-	-
으ㅠ		-	-	-	-	-
판촉	소계	-	-	-	-	-
근속		-	-	-	-	-

#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연락처	1670-7000
피보험인(보험계약자)	그 저 거리 ㅡ 기막힌한상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AIR TRADE MEDIATION Z맹점자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2개월 또는 가맹점 영업개시일 중 빠른 시점
보험금액	예치가맹금에 해당되는 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Ш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١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전주진국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별도 구입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	-	-
인테리어, 주방설비 등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입비	5,500	계약체결과 동시 예치	반환 안됨	가맹점 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귀책사유 없는 해지시 정산후 반환
교육비	3,300	계약체결과 동시 예치	반환 안됨	개점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점전 교육 미이수시 반환
총계	8,80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전주진국밥]은 현재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면 제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가맹계약 해지시 반환	계약 해지시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합계 합계	8,8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점포내외 공사)	가맹본부 또는 자체시공	27,500	1,375	공사 시작 1일 이전	공사 전 계약취소	66m²(20평) 기준
간판	가맹본부 또는 자체시공	5,500	ADE MEDIATI -	공사 시작 1일 이전	제작 전 계약취소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주방설비 및 집기	가맹본부 또는 자체시공	11,000	-	공사 시작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POS	(협력업체)	-		POS 설치 1일 이전	공급 전 계약취소	별도 계약
최초공급상품	(협력업체)	1,500	-	개 점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별도 계약
	총계	45,500	-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 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매장의 크기, 형태에 따라 투자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인테리어는 직접시공할 수 있습니다. 직접시공시 가맹본부의 철저한 감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점포 공사부분에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m²기준으로 110천원(부가세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기 기재비용의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총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ᄄᄂ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 가맹점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 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외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개점전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 재교육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전주진국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물품의 상세 내역은 별점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 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8.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	매월 가맹본부 지정일	-	-	-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훈련실비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III.1. 교육훈련 참조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광고/판촉 약정서 체결 반환되기	별 이후에는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선택	협의	협의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반환없음		월계속/맹금의 지급/현을 경고했을 시 부담

<sup>※</sup> 당사의 광고 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준: 2023년)	내 용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당 가맹사업의 기준에 따른 점포운영 및 관리여부를 조사 실시	수 시	문의 : 가맹사업팀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수 시	문의 : 가맹사업팀
회계처리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및 감독	수 시	문의 : 가맹사업팀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상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 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전주진국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 운영권 양도시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양수인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비 지급 후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양수인은 승낙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양도자의 잔여기간 승계가 아닌 갱신권 보장기간인 10년을 보장)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및 당사의 모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 등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및 원상회복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종료 후의 조치

-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 표지와 특허, 의장 등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지체하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지체 및 위반기간에 대하여 일(日) 당 일금 **삼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 ٧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ADE MEDIATION AGENCY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전주진국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전주진국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전주진국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



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진 수육국밥			
진 순대국밥			
진 돼지국밥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1차 : 구두경고  2차 : 1차 서면시정조치	당사지정 품목은
진 내장국밥	가맹사업의 종일성을	2차 : 1차 시킨시영소시  3차 : 물품공급 중단	신상품 개발
진 모듬국밥	유시아기 위아버 당사가	ᇪᆉᆫᆞᇬᆉᆫᆏᄜᆈᄸᆽᅱ	등으로 변경될
진 짬뽕국밥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5차 : 가맹계약의 해지	수 있습니다
곱창전골			
순대전골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경쟁업체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금지	5차 : 결합하다 중단 4차 : 2차 서면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의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 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진 수육국밥	8,500원		별첨2
진 순대국밥	8,500원		
진 돼지국밥	8,000원	홈페이지, 유선전화, 팩스, 방문, 우편	
진 내장국밥	8,500원		
진 모듬국밥	9,000원		
진 짬뽕국밥	9,500원		
 곱창전골	25,000원		
순대전골	25,000원		

귀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가 정한 소정양식에 의해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합의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수육, 토종순대, 국밥류를 판매하는 업	전주진국밥	해당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계약매장에서부터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행정구역당 1점포(동 기준)	범진에 여러되어 표니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시포함답을 연구 <del>스</del> 포 급)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 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ol> <li>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li> <li>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li> <li>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li> <li>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li> </ol>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 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 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 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 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ヷ<del>ゖヱ</del>ヹヺヲヹゖ゙゙゙゙゙゙゙ヹゔ゚゚゚゚゚゚ヹ゚゚゚゚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전주진국밥]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 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전주진국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 해당 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Ę	국내 온라인·오프라	인 판매 매출액 비증	<u>z</u>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충TION AC	ENCY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1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까?	리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예→B, 아니오→D	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예 $\to$ B, 아니오 $\to$ 8	지하였습니까?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예→E, 아니오→A	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5. [기막힌한상]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



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상대방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일반적 해지사유 및 그 절차
- ①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해지 사유

- 1. '을'이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 2. '을'이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3. '을'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4. '을'이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5.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을'이 '갑'의 사전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 7. '갑'이 '을'과의 협의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
- 8.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 9. '갑' 또는 '을'이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정하는 물류공급 중단 사유

#### 물품공급 중단 사유

- 1. '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2.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갑'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갑'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3. '을'이 제3조 제1항(가맹점의 표시)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 4.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5.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실시하는 필수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 6. '을'이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7. '을'이 경업을 하거나 '을'의 직원 등을 통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 8. '을'이 물품대금, 로열티, 광고·판촉비 등의 대금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을'의 채무가 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9. '을'이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10. '을'이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을'이 '갑'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11. '을'이 노후 된 점포설비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12. '을'이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13.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을 변경·추가하거나 '갑'에 의해 변경된 상품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14. '을'이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15. '을' 또는 '을'의 직원이 '갑'이 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16. '을'이 '갑'의 각종 매뉴얼 기준에 따른 관리 기준을 계약기간 내에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당사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17. '을'이 '갑'과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8. '을'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19.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20.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갑'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2) 즉시 해지사유 및 그 절찬 국공정거래조정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치 할 수 있습니다.TION AGENCY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u></u> 안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가맹본부와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교육비를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양도양수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의 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가맹본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 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벵심사업사가   지저하 버의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 으로 대리행사 신청 → 가맹본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 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전주진국밥]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b>전주진국밥]과</b> 동일한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가맹본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가맹본부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시 ~ 24시	연중 무휴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시 조절 가능)	(가맹본부와 협의시 조절 가능)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1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자 율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가맹점 대표자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ul> <li>당사의 정책 준수 여부</li> <li>당사가 정한 상품 취급 여부</li> <li>당사가 정한 필수공급품목 취급 여부</li> <li>원부재료 품질기준 준수 여부</li> <li>매장 위생 및 청결상태</li> <li>각종설비 관리 상태</li> <li>기타 가맹점 매뉴얼 규정 등 가맹점 운영현황 전반</li> </ul>	담당자 매장방문 또는 유무선 연락 → 관리내역 점검 → 상담일지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서명 또는 통지 → 완료	방문 또는 유·무선 연락 등을 통하여 월 1회이상	가맹본부

<sup>※</sup>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전주진국밥]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下正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한참 결사	미끄
	상품광고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이상 동의→ 가맹점의 행사 참여	
광고 전체행사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생사별로 분담비 안내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	
	할인행사			<판촉>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증정행사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ᆔᄎᇷᆡ	팜플렛 등 제작		12조의6제1항에 성서 체결 또는	(2) 가맹점사업자 70%	
판촉행사		The state of the s	행사별로 분담비 안내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
	기타전체행사	한국공청거래 KOREA FAIR TRADE MEDIATIO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판촉을 실시할	
				내장으로 판족을 질시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나 판촉의 내용과 문안, 기타 시행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 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자점매입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제34조(계약의 해지)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기막힌한상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착벌로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계약 존속 중(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 삼십만원 (₩300,000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C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5)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 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VI

#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계약 1일 전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D-30~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8~27(1일)	
실내외 공사착수	- 자체 공 <sup>CREA FAIR TRADE MEDI</sup>	ATION AGENCY D-26(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6~6(20일)	
집기/상품입고	- 점포집기 및 초도물품 입고	D-5~2(4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3~1(2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등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 <a href="http://www.kofair.or.kr">http://www.kofair.or.kr</a>)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ul>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가능)</li> <li>★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li>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li> </ul>
	※ 분할지급시의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지급: 청구일로부터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 총 부담액의 30%  2차 지급: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 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가능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



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음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무상대여	해당없음				차후 진행시 사전협의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CRM	해당없음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 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A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 본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가맹 본부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전주진국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 신규교육 (개점전교육)	회사 소개, 점포운영, 기기사용법, 발주 및 입금 방법 등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교육	이론/실습 교육	개점 전 이수	필수 교육
수시교육 등 (개점후교육)	신메뉴 가공, 서비스 강화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실습 교육	필요시	필요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전주진국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교육	KOREA FAIR TRAD	E MEDIATION AGENCY	개점 전 이수
수시교육 등	교육필요시 실시	교육실비	필요시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 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 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 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자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만료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IX |

#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②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한국하철거리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0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상기 내역 중 거래상대방 권장품목을 지정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 받을 경우 반드 시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이 아닌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 수취품 목은 경영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귀하가 직접 자체조달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 시 차액가맹금 및 판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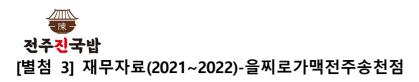
# [별첨 2]「전주진국밥」권장판매가격

전 수육국법 8,500원 (1)인 기준   전 순대국법 8,500원 (1)인 기준   전 돼지국법 8,000원 (1)인 기준   전 내장국법 8,500원 (1)인 기준   전 모등국법 9,000원 (1)인 기준   전 전쟁국법 9,500원 (1)인 기준   집장전골 25,000원 (2)인 기준   수육한접시(200g) 9,000원 (1)인 기준   구숙한접시(400g) 17,000원 (2)인 기준   모속한접시 8,000원 (1)인 기준   토종순대 6,000원 (1)인 기준   합박스테이크 5,000원 (1)인 기준	상 품 명	권장판매가격	비고
진 돼지국밥 8,000원 (1)인 기준  진 내장국밥 8,500원 (1)인 기준  진 모듬국밥 9,000원 (1)인 기준  진 짬뽕국밥 9,500원 (1)인 기준  곱창전골 25,000원 (2)인 기준  순대전골 25,000원 (2)인 기준  수육한접시(200g) 9,000원 (1)인 기준  수육한접시(400g) 17,000원 (2)인 기준  편육한접시 8,000원 (1)인 기준  토종순대 6,000원 (1)인 기준  함박스테이크 5,000원 (1)인 기준	진 수육국밥	8,500원	(1)인 기준
전 내장국밥 8,500원 (1)인 기준  전 모듬국밥 9,000원 (1)인 기준  진 짬뽕국밥 9,500원 (1)인 기준  곱창전골 25,000원 (2)인 기준  순대전골 25,000원 (2)인 기준  수육한접시(200g) 9,000원 (1)인 기준  수육한접시(400g) 17,000원 (2)인 기준  편육한접시 8,000원 (1)인 기준  토종순대 6,000원 (1)인 기준  함박스테이크 5,000원 (1)인 기준	진 순대국밥	8,500원	(1)인 기준
진 모듬국밥 9,000원 (1)인 기준  진 짬뽕국밥 9,500원 (1)인 기준  곱창전골 25,000원 (2)인 기준  순대전골 25,000원 (2)인 기준  수육한접시(200g) 9,000원 (1)인 기준  수육한접시(400g) 17,000원 (2)인 기준  편육한접시 8,000원 (1)인 기준  토종순대 6,000원 (1)인 기준  함박스테이크 5,000원 (1)인 기준	진 돼지국밥	8,000원	(1)인 기준
진 짬뽕국밥 9,500원 (1)인 기준	진 내장국밥	8,500원	(1)인 기준
곱창전골 25,000원 (2)인 기준	진 모듬국밥	9,000원	(1)인 기준
순대전골25,000원(2)인 기준수육한접시(200g)9,000원(1)인 기준수육한접시(400g)17,000원(2)인 기준편육한접시8,000원(1)인 기준토종순대6,000원(1)인 기준함박스테이크5,000원(1)인 기준	진 짬뽕국밥	9,500원	(1)인 기준
수육한접시(200g) 9,000원 (1)인 기준 수육한접시(400g) 17,000원 (2)인 기준 편육한접시 8,000원 (1)인 기준 토종순대 6,000원 (1)인 기준 함박스테이크 5,000원 (1)인 기준	곱창전골	25,000원	(2)인 기준
수육한접시(400g) 17,000원 (2)인 기준 면육한접시 8,000원 (1)인 기준 토종순대 6,000원 (1)인 기준 함박스테이크 5,000원 (1)인 기준	순대전골	25,000원	(2)인 기준
편육한접시 8,000원 (1)인 기준 토종순대 6,000원 (1)인 기준 함박스테이크 5,000원 (1)인 기준	수육한접시(200g)	9,000원	(1)인 기준
토종순대 6,000원 (1)인 기준 함박스테이크 5,000원 (1)인 기준	수육한접시(400g)	17,000원	(2)인 기준
함박스테이크 5,000원 (1)인 기준 <b>1 구공정거리 조정원</b>	편육한접시	8,000원	(1)인 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토종순대	6,000원	(1)인 기준
1	함박스테이크	5,000원	(1)인 기준
	KORE	De SUDDE SUBSEINE A COLUMN A DESCRIPT A SUBSEIN A A SUDDE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sup>※</sup> 상기의 상품중 당사의 전용상품과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은 강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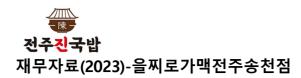
<sup>※</sup> 신상품 도입 등으로 인해 상품이 증감할 수 있습니다.

<sup>※</sup> 상기의 공급 상품은 원가인상 등으로 공급가 및 판매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